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 개정 배경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도출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 사업 추진중 국회,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 타 법령의 개정사항 등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 * 정부 합동점검('14.10.12~12.12), 관계자 워크숍('14.9.25 ~ 9.26) 등을 통해 개정수요 파악

□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① 민간자부담 5% 이하로 조정시 광역시·도 경우 (제3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자부담 조정승인 신청시 중기청장에게 직접 승인을 받아 조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광역시·도를 경유하여 중기청에 민간 자부담 조정승인 신청	○ 광역시·도가 모른 채 자부담비율 조정 → 관내 시장간 자부담비율 차이로 인한 형평성문제 발생
② 주차장관련 사업비를 시장별 지원한도 산정시 합산 제외 (제4조제3항)		
<신 설>	○ 주차장 조성은 지원한도에서 제외	○ 공영주차장이고, 지원규모가 커 주차장 조성으로 지원한도 초과 ○ 지자체 의견 반영

<p>③ 우선 지원대상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전통시장을 추가 (제8조제3호)</p>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전통시장” 추가 ○ 같은 조의 기존 제3호 내지 제6호를 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개량·보수 강화 필요
<p>④ 지원 제외대상 명확화 (제9조제1항제4호·5호 및 제3항제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을 지원 제외 ○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 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한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지자체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활성화 용역을 거쳐 중장기 활성화계획 수립한 시장 ○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하위 등급 시장이라도 지자체 및 시장에서 활성화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요건에 주주 구성원 수는 무관
<p>⑤ 지침 중대 위반사유 구체화 및 지원제외관련 조문 이관 (제9조제4항·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중대하게 위반시 3년간 지원제한 가능 ○ 지침 위반한 시·군·구에 차년도 예산 편성시 10%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변경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억원 이상 : 3년 - 10억원 이상 : 2년 - 5천만원 이상 : 1년 ○ 민자부담 규정 위반 : 3년 ○ 사업비 집행규정 위반(상인회 집행) : 3년 ○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합동점검후 수립한 개선 방안 반영 ○ 신뢰보호

⑥ 지원 대상사업 추가 (제10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제6호 <신 설>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추가	○ 시·도의견 반영																
⑦ 아케이드 사업추진시 사전 동의율 완화 (제11조제4항)																		
○100% 동의	○90%이상 동의	○국회 지적																
⑧ 공설시장 재건축사업 신청시 사업설명회 결과 제출 의무화 (제11조제8항)																		
○제출 서류 추가	○공설시장 재건축사업 신청시 사업설명회 결과 첨부	○점포 이전 보상과 재배치관련 민원 방지																
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규정 강화 (제11조제9항·제10항)																		
○예산 귀속년도로부터 4년째에 반납 ○제11조제10항 <신 설>	○4년째되는 해 5월말까지 반납 ○집행잔액 미반환시 신규선정 제외 등	○반납기한 명확화																
⑩ 사업완료후 임대료 동결에 합의한 곳에 대한 가점 확대 (제13조제2항제5호·제7호)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 가점 5점 ○임대료 1%~9% 이상 증가 : 감점 1~5점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 가점 최대 10점	○전문가 의견 반영 ○전문가 의견 반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3년이상</th> <th>2년이상</th> <th>1년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00%</td> <td>10</td> <td>7</td> <td>6</td> </tr> <tr> <td>80%이상</td> <td>9</td> <td>6</td> <td>5</td> </tr> <tr> <td>50%이상</td> <td>5</td> <td>4</td> <td>2</td> </tr> </tbody> </table>		구분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100%	10	7	6	80%이상	9	6	5	50%이상	5	4	2
	구분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100%		10	7	6													
	80%이상		9	6	5													
50%이상	5	4	2															
○<삭 제>																		
⑪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예산신청서 제출기일 단축 (제13조·제14조)																		
○예산편성안 제출(시·도지사→중기청장) : 5.31일	○4.30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 개정 사항 반영 (‘14.1.1시행)																
○예산편성안 검토의견 제출(중기청장→기재부장관) : 없음	○5.31일																	

⑫ 상인연합회 지회장의 시·도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신설 (제13조제3항제4호)		
○ 전국상인연합회 시·도지회장	○ 전국상인연합회 시·도지회장 - 다만, 안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제척	○ 시·도의견 반영
⑬ 사업계획 변경요건 강화 (제19조제1항)		
○ 변경승인권자별 사업 변경금액 - 시·군·구 자체 : 5천만원 이하 - 시·도 승인 : 1억원 이하 - 지방중기청장 : 1억원 초과 등	○ 변경승인권자별 사업 변경금액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정부합동점검 후 수립한 개선 방안 반영
○ 대상시장 또는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 : 지방중기청장 승인	○ 중기청장 승인(시·도 경유)	
⑭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무상위탁 금지 (제22조제1항)		
○ 사용료 징수 근거규정 없음	○ 지자체장은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운영 금지	○ 정부합동점검 후 수립한 개선 방안 반영
⑮ 사업완료후 지원효과 평가 이행력 제고 (제25조제5항·제6항)		
○ 시·도지사가 표본 또는 전수조사 (2년, 1회)	○ 시장·군수·구청장이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전수조사, 5년간 매년 1회) ○ 불이행시 사업 참여 제한	○ 사업 성과평가를 위해 지원효과 추적조사 필요
⑯ 자구노력하는 시장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평가기준 개선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타당성 40점 ○ 추진 가능성 35점 ○ 경영활성화 정도 25점 ○ 가점 4점	○ 사업타당성 25점(△15점) ○ 추진 가능성 35점 ○ 경영활성화 정도 40점(+15점) ○ 가점 6점(+2점) - 그간 지원실적이 없는 시장이 사업신청시 가점 2점	○ 상인자구노력(상인교육, 카드사용률 등) 관련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

⑰ 신청양식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절충, 시설물 활용도 제고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p><신 설></p>	<p>○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업신청시 기재토록 양식 변경</p> <p>- (대상 사업)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아케이드 또는 화장실 설치사업</p> <p>- (위원회 구성) 상인대표(2인이상), 담당공무원(부서장, 담당자), 외부전문가, 건물소유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총 7인 이상</p> <p>- (주요 기능) 사업추진관련 주요 의사결정</p>	<p>사업추진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절충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신청양식에 명문화</p>
<p><신 설></p>	<p>○ 사업신청서에 시설물 관리운영계획서를 첨부토록 양식 변경</p> <p>- (대상 시설물) 주차장, 화장실, 고객쉼터, 놀이방, 에스컬레이터, 상인교육장 등</p> <p>- (주요내용) 시설물 관리·운영 주체, 수익발생 시설물의 관리·운영 방안, 유지관리비 조달 방법 등</p>	<p>신청 단계에서 시설물의 사용계획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완료후 시설물 사후관리 강화</p>
<p><신 설></p>	<p>○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매년 1회씩 5년간 조사하는 방법을 기재토록 신청양식 변경</p>	

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신청시 점포별 부담액을 결정 (지침 별지 제9-1, 9-2호 서식)

<p>○ ‘시설현대화사업 사전동의합의서’(지침 별지 제9-1호, 9-2호 서식)에는 자부담 금액 기재란이 없음</p>	<p>○ 민간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신청당시 점포별 부담액을 기재한 사전동의서를 징구토록 신청양식 변경</p>	<p>신청 단계에서 점포별 자부담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단계에서 동의 번복에</p>
---	--	--

		따른 사업추진 지연 방지
⑰ 기타 법령의 개정이나 기관명칭 변경 등을 반영		
○ 지침 제2제1호에서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	○ “ <u>전통시장</u> ”으로 단일화	전통시장특별법 개정(‘12.12월) 사항 반영
○ 지침 제2제2호에서 인용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 정의조항은 제2조제6호	○ <u>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 정의조항은 제2조제7호가 맞는 표현</u>	유통산업발전법 개정(‘13.3월) 사항 반영
○ 지침의 제5조·제6조·제12조·제18조·제25조에 적시된 기관명칭 “ <u>시장경영진흥원</u> ”	○ “ <u>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u> ”으로 변경	중전 시장경영진흥원이 소상공인진흥원과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14.1월 출범
○ 지침 제27조 <신 설>	○ 본 지침의 개·폐를 위한 재검토 기한 설정 - 고시 발령 후 여건의 변화 등으로 개정·폐지 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2.15) 제7조에 따름

□ 향후 추진일정

- ‘15.1월중 :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홈페이지 등, 20일이상), 규제심사(총리실), 부패영향평가(자체 감사실)
- ‘15.2월초 : 개정지침 고시 및 국회 제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중 일부개정안
제정 2006. 5.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3호 전부개정 2007. 2.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9호 일부개정 2008. 2.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 6호 전부개정 2008. 9.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9호 일부개정 2009. 2.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11호 일부개정 2009. 9.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1호 일부개정 2010.11.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6호 일부개정 2011.06.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9호 일부개정 2011.12.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32호 일부개정 2012.12.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0호 일부개정 2013.12.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5호	제정 2006. 5.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3호 전부개정 2007. 2.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9호 일부개정 2008. 2.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 6호 전부개정 2008. 9.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9호 일부개정 2009. 2.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11호 일부개정 2009. 9.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1호 일부개정 2010.11.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6호 일부개정 2011.06.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9호 일부개정 2011.12.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32호 일부개정 2012.12.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0호 일부개정 2013.12.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5호 일부개정 2015. 1.0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00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을 말한다.</u>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u>제2조 제6호</u>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 <u>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2. ----- <u>제2조 제7호</u> ----- -----. 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조건) ①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u>시장활성화구역</u> 및 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는 최대 60%이내를, 지자체 30% 및 민간 10%(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5%이내 부담 가능)를 부담하는 조건으	제3조(지원조건) ① ----- ----- <u>상권활성화구역</u> ----- ----- ----- ----- -----

로 한다. 다만, 지역의 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의 분담비율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4조(국비 지원한도) ① ~ ② (생략)

③ <신설>

제8조(우선 지원대상) 시·도지사는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신설>

- 3.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 구역
- 4.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5.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6. LED 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제9조(지원 제외대상) ① 다음 각호의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의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국비 지원한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 산정시 주차장 신축·증축 또는 개량 등에 소요된 국비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선 지원대상) -----

1. ~ 2. (현행과 같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전통시장

- 4.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 구역
- 5.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6.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7. LED 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제9조(지원 제외대상)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단, 안전시설 지원 가능)

5. 1명 소유시장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한 시장

6. ~ 7.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상점가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 2. (생략)

3.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상점가(단서 신설)

4. (생략)

④ 중소기업청의 점검결과 운영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시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10% 감액할 수 있다.

4. -----

----(단,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전문기관의 활성화 용역을 거쳐 중장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5. ----- 또는 영업매장 -----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전문기관의 활성화 용역을 거쳐 중장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4. (현행과 같음)

④ 중소기업청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청의 점검결과 운영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시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다음연도부터 다음 각호의 제한기간 동안 지원을 제외할 수 있으며, 중복 위반시 제한기간을 합산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시·군·구
 - 가. 사업 변경금액 20억원 이상 : 3년
 - 나. 사업 변경금액 10억원 이상 : 2년
 - 다. 사업 변경금액 5천만원 이상 : 1년
2. 사업 완료시까지 제3조제1항의 민간자부담금 규정을 위반한 시·군·

및 토지주의 100% 동의를 있어야 한다.

⑤ ~ ⑧ (생략)

⑨ 예산 귀속연도로부터 최대 이월 가능한 2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은 4년째에 반납하여야 해당 시·군·구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신설>

제13조(심사 및 조정)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가점사항(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5점) : 별지 제9-1에 따라 대상자의 4/5 이상 동의

6. (생략)

7. 감점사항(임대료 증감율 평균 9% 이상(-5), 7~9%(-4), 5~7%(-3), 3~5%(-2), 1~3%(-1), 임대료 인하·동결 미합의 시장 : -5점 *2016년부터 적용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90% 동의를 있어야 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 귀속연도로부터 최대 이월 가능한 2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은 4년째 되는 해의 5월말까지 반납완료하여야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중소기업청장은 제9항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신규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금을 일시 정지 또는 상계처리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및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가점사항(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10점) : 별지 제8호 또는 제9-1호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및 기간에 따른 가점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00%	10	7	6
80% 이상	9	6	5
50% 이상	5	4	2

6. (현행과 같음)

7. <삭제>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한다.

1. ~ 3. (생략)
4. 전국상인연합회 시·도 지회장

5. (생략)
 ④ ~ ⑦ (생략)
 ⑧ 시·도지사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을 포함한 예산편성안과 국고보조금신청서(별지 제3~5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제14조(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① ~ ③ (생략)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9조(사업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변경은 2회로 제한한다.

1. 사업 변경금액(추가사업 금액 포함)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 변경금액(추가사업 금액 포함)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

1. ~ 3. (현행과 같음)
4. 전국상인연합회 시·도 지회장 (제척 사유 발생시 사업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인조직 대표 중 한 사람)

5.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도지사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배정된 예산 -----

4월 30일까지 -----
 -----.

1. ~ 10.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제19조(사업변경) ① -----

 -----.

1. -----
 -- 3천만원 이하-----

 -----.
2. -----
 -- 5천만원 이하일-----

를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1~2호의 규모이상의 사업변경(추가
사업 금액 포함)할 때와 시·도지사
가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
(시·군·구)를 변경할 때와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시·군·구)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대상시장, 사업내
용 전체를 변경하거나 부지의 위
치를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시·도 의견첨부)하여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승
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신 설>

제22조(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위탁
운영) ①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
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
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5조(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① ~ ④
(생략)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

-----.

- 3. -----

----- 변경할 때와 부지의

-----.

4.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시·군·
구)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대상시
장 또는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하
는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시·도 의
견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계획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으로 당해 시장 등 또는 타 시장
등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다.

제22조(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위탁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현
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공
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
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
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은 무
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
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총사업비 5억원 이

한 시장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해당 상권에 대해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2년마다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27조 <신 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인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에 대하여 상인조직으로 하여금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 증감, 고객 만족도 및 활용도 등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25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산점검시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중소기업청장이 기한을 정하여 제5항에 따른 사업성과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시·군·구 및 시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은 신규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제22조제1항에 반하여 수익발생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하는 조례를 운용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설현대화사업 실태 조사표

시장·시장활성화 구역·상점가명		
조사일자		200
조사자 (확인자)	소속 : ○○지방중소기업청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시·도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면담자	시·군·구	직책 : 성명 :
	상인	직책 : 성명 :

중소기업청
지자체명

<별지 제1호 서식>

시설현대화사업 실태 조사표

시장·상권활성화 구역·상점가명		
조사일자		200
조사자 (확인자)	소속 : ○○지방중소기업청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시·도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면담자	시·군·구	직책 : 성명 :
	상인	직책 : 성명 :

중소기업청
지자체명

1. 시장 개요

□ 일반현황

시장·시장활성 화구역·상점 가명		시장구 분 (등록 인정/상설 정기)	/
소재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호	() -
대표자명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 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구조)		
대지면적(m ²)		건물연면 적(m ²)	
매장면적(m ²)		점포 수	
부대시설			
취급품목			

□ 점포 운영형태 및 종사자 현황

점포수(개)				종사자수(명)			
계	점포주 직영	임대 운영	공점포	계	자 영 업 종 사 자	상 용 종 사 자	기 타 (노 점 상 등)

2. 사업비 지원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연도별	지원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 지원주체란은 중기청, 행자부, 지자체 또는 자체추진 등으로 표기

3. ○○년 사업계획

1. 시장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 역·상점가명		시장구 분 (등록 인정/상설 정기)	/
소재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호	() -
대표자명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 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구조)		
대지면적(m ²)		건물연면 적(m ²)	
매장면적(m ²)		점포 수	
부대시설			
취급품목			

□ 점포 운영형태 및 종사자 현황

점포수(개)				종사자수(명)			
계	점포주 직영	임대 운영	공점포	계	자 영 업 종 사 자	상 용 종 사 자	기 타 (노 점 상 등)

2. 사업비 지원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연도별	지원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 지원주체란은 중기청, 행자부, 지자체 또는 자체추진 등으로 표기

3. ○○년 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업 비(억원)			
	계	국 비	지방 비	민간 부담
①				
계				

4.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사업 타당성	추진 가능성	경영 활성화	가점	합 계
배 점	40	35	25	4	104
평 가					

가. 사업의 타당성(40점)

- 1) 연차 또는 신규사업 여부()
 - ① 연차사업(5점) ② 신규사업(3점)
- 2)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여부()
 - ① 연구용역을 마친 시장(5점)
 - ②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시장(4점)
 - ③ 연구용역 및 전문가 컨설팅을 받지 않은 시장(0점)
- 3) 사업계획의 충실성()
 - ①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충실함(4점)
 - ②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다소 미흡(2점)
 - ③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0점)
- 4) 사업의 시급성
 - ※ 추진하려는 사업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처리
- 4-1) 주차장[시장의 시설면적대비 법정주차대수 (150㎡당 1대) 충족율] ()
 - ① 주차장 없음(15점)
 - ② 충족율 70%미만(12)
 - ③ 충족율 70~100%미만(9점)
 - ④ 충족율 100~150%미만(6점)
 - ⑤ 충족율 150%이상(3점)
- 4-2) 진입로 등 도로 개설·확장()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업 비(억원)			
	계	국 비	지방 비	민간 부담
①				
계				

4.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사업 타당성	추진 가능성	경영 활성화	가점	합 계
배 점	25	35	40	6	106
평 가					

가. 사업의 타당성(25점)

- 1) <삭 제>
- 1)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여부()
 - ① 연구용역을 마친 시장(5점)
 - ②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시장(4점)
 - ③ 연구용역 및 전문가 컨설팅을 받지 않은 시장(1점)
- 2) 사업계획의 충실성()
 - ①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충실함(4점)
 - ②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다소 미흡(2점)
 - ③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1점)
- 3) 사업의 시급성
 - ※ 추진하려는 사업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처리
- 4-1) <삭 제>
- 3-1) 진입로 등 도로 개설·확장()

<p>① 신설(15점) ② 도로 확장(10점) ③ 도로 포장(5점)</p> <p>4-3) 아케이드, 화장실 등 시설물()</p> <p>① 신설(15점) ② 노후화되어 교체 필요(10점) ③ 기존 시설물 사용가능(0점)</p> <p>4-4) 전기·통신·소방·상하수도 등 설비()</p> <p>① 신설(15점) ② 노후화되어 교체 필요(10점) ③ 기존 시설물 사용가능(0점)</p> <p>5) 사업 규모의 적정성</p> <p>① 적정(3점) ② 다소 과다(1점) ③ 과다(1점→0점)</p> <p>6) 공사비용의 적정성</p> <p>① 적정(3점) ② 다소 과다(1점) ③ 과다(0점)</p> <p>7) 유지관리계획의 충실성()</p> <p>①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충실함(5점) ②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다소 미흡(3점) ③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부실(1점) ④ 유지관리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0점)</p> <p>나. 추진 가능성(35점)</p> <p>1) 민간자부담 확보여부()</p> <p>① 민간자부담 100% 확보되어 있음(10점) ② 민간자부담 80%이상 확보되어 있음(5점) ③ 민간자부담 80미만 확보되어 있음(0점)</p> <p>2) 이해관계자 동의여부()</p> <p>① 이해관계자 100% 동의서 제출(5점) ② 이해관계자 80%이상 동의서 제출(4점) ③ 이해관계자 80%미만 동의서 제출(0점)</p> <p>3) 부지 확보 여부()</p> <p>① 부지 확보(10점) ② 부지 매각 동의서 확보(5점) ③ 부지 미확보 및 매각동의서 미확보(0점)</p> <p>4)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p> <p>①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100% 집행 가능(10점) ② 사전준비를 일부 완료하여 70% 이상 집행 가능(5점)</p>	<p>① 신설(10점) ② 도로 확장(7점) ③ 도로 포장(5점)</p> <p>3-2) 아케이드, 화장실 등 시설물()</p> <p>① 신설(10점) ② 노후화되어 교체 필요(7점) ③ 기존 시설물 사용가능(1점)</p> <p>3-3) 전기·통신·소방·상하수도 등 설비()</p> <p>① 신설(10점) ② 노후화되어 교체 필요(7점) ③ 기존 시설물 사용가능(1점)</p> <p>4) 사업 규모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p> <p>① 적정(3점) ② 다소 과다(2점) ③ 과다(1점)</p> <p>6) <삭 제></p> <p>5) 유지관리계획의 충실성()</p> <p>①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충실함(3점) ②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다소 미흡(2점) ③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부실(1점)</p> <p>나. 추진 가능성(35점)</p> <p>1) 민간자부담 확보여부()</p> <p>① 민간자부담 100% 확보되어 있음(10점) ② 민간자부담 80%이상 확보되어 있음(5점) ③ 민간자부담 80%미만 확보되어 있음(1점)</p> <p>2) 이해관계자 동의여부()</p> <p>① 이해관계자 100% 동의서 제출(5점) ② 이해관계자 80%이상 동의서 제출(3점) ③ <삭 제></p> <p>3) 부지 확보 여부()</p> <p>① 부지 확보(10점) ② 부지 매각 동의서 확보(5점) ③ <삭 제></p> <p>4)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p> <p>①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100% 집행 가능(10점) ② 사전준비를 일부 완료하여 70% 이상 집행 가능(5점)</p>
---	---

③ 집행 가능성 없음(0점)

다. 경영활성화 정도(25점)

1) 전년도 교육참여(연인원) 실적()

- ① 전체 상인수 대비 50%이상(3점)
- ② 전체 상인수 대비 20%~50%(2점)
- ③ 전체 상인수 대비 20%미만(1점)

2) 카드사용()

- ① 점포 70%~100%(3점)
- ② 점포 50%~70%미만(2점)
- ③ 점포 50%미만(1점)

3)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① 100%(3점) ② 70%~100%미만(2점)
- ③ 70%미만(1점)

4) 상인회 가입율()

- ① 100%(3점) ② 70% ~ 100%미만(2점)
- ③ 70%미만(1점)

5)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현대화()

보기	① 전통시장 상품권	②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물
	③ 홈페이지	④ 배송 콜센터
	⑤ 공동브랜드	⑥ 활성화 연구용역
	⑦ 그 밖의 경영현대화 공동사업(전단지, 이벤트, 우수 점포선정, 방송홍보 등)	

- ① 2건 이상 & 1억원 이상(3점) ② 1건 이상 & 3천만원 이상(2점) ③ 1건 이상 & 1천만원 이상(1점)

6)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율()

- ① 100%(5점) ② 70%~100%미만(4점)
- ③ 50%~70%미만(3점)
- ④ 30%~ 50%미만(2점) ⑤ 30%미만(1점)

7) 고객선 지키기 이행율()

- ① 100%(5점) ② 70%~100%미만(4점)
- ③ 50%~70%미만(3점)
- ④ 30%~ 50%미만(2점) ⑤ 30%미만(1점)

사. 가점(4점)

1) 중소기업청 주최 시설현대화사업 교육에 1회이

③ 집행 가능성 낮음(1점)

다. 경영활성화 정도(40점)

1) 전년도 교육참여(연인원) 실적()

- ① 전체 상인수 대비 50%이상(6점)
- ② 전체 상인수 대비 20%~50%(3점)
- ③ 전체 상인수 대비 20%미만(1점)

2) 카드사용()

- ① 점포 70%~100%(8점)
- ② 점포 50%~70%미만(4점)
- ③ 점포 50%미만(1점)

3)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① 70%~100%(3점) ② 50%~70%미만(2점)
- ③ 50%미만(1점)

4) 상인회 가입율()

- ① 70%~100%(3점) ② 50%~70%미만(2점)
- ③ 50%미만(1점)

5)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현대화()

보기	① 전통시장 상품권	②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물
	③ 홈페이지	④ 배송 콜센터
	⑤ 공동브랜드	⑥ 활성화 연구용역
	⑦ 그 밖의 경영현대화 공동사업(전단지, 이벤트, 우수 점포선정, 방송홍보 등)	

- ① 2건 이상 & 1억원 이상(10점) ② 1건 이상 & 3천만원 이상(7점) ③ 1건 이상 & 1천만원 이상(3점)

6)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율()

- ① 70%~100%미만(5점) ② 50%~70%미만(4점)
- ③ 30%~ 50%미만(3점) ④ 30%미만(1점)

7) 고객선 지키기 이행율()

- ① 70%~100%미만(5점) ② 50%~70%미만(4점)
- ③ 30%~ 50%미만(3점) ④ 30%미만(1점)

라. 가점(6점)

1) 중소기업청 주최 시설현대화사업 교육에 1회이

<p>상(평가 전년도 기준) 참여한 시장·상점가 : 3점</p> <p>2) 최근 3년 이내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기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등 : 1점</p> <p>5. 기타 특이사항</p>	<p>상(평가 전년도 기준) 참여한 시장 등 : 3점</p> <p>2)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실적이 없는 시장 등 : 2점</p> <p>3) 최근 3년 이내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기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등 : 1점</p> <p>5. 기타 특이사항</p>
--	--

<별지 제5호 서식>

국고보조금 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작성 *

1. 개요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등록시장()	공설시장()
	정기시장()	인정시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관리자(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구조)	점포 수	
대지면적(m ²)		건물연면적(m ²)	
매장면적(m ²)		부대시설	
취급품목			

매장현황

면적(m ²)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영	임대	분양	상품판매	용역업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포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종사자	상용종사자	기타(노점상 등)

시장 및 상권특성

<별지 제5호 서식>

국고보조금 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작성 *

1. 개요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등록시장()	공설시장()
	정기시장()	인정시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관리자(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구조)	점포 수	
대지면적(m ²)		건물연면적(m ²)	
매장면적(m ²)		부대시설	
취급품목			

매장현황

면적(m ²)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영	임대	분양	상품판매	용역업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포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종사자	상용종사자	기타(노점상 등)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셋길(시장2길, 시장4길)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셋길(시장2길, 시장4길)

□ 영업현황

매출액 (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2일, 7일) : 20,000여명, 상설 : 10,000여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영업현황

매출액 (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2일, 7일) : 20,000여명, 상설 : 10,000여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사업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광역 기초	민간	
합 계							

* 당해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
(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사업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광역 기초	민간	
합 계							

* 당해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
(국비, 행정자치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사업내역

□ 사업개요 : 00사업, △△사업

- 00사업 : 아케이드 2구간(400㎡) 사업(1구간 2010년 사업완료)
- △△사업 :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 기대효과

-
-

□ 사업 추진계획(일정)

3. 사업내역

□ 사업개요 : 00사업, △△사업

- 00사업 : 아케이드 2구간(400㎡) 사업(1구간 2010년 사업완료)
- △△사업 :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 기대효과

-
-

□ 사업 추진계획(일정)

○

○

□ 관리·운영 계획

○

○

○

○

□ 관리·운영 계획(작성방법 : 별지 제5호의2 서식 참고)

○

○

□ 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 :

○ 위원 :

○ 주요역할 :

○ 개최주기 :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 (대상)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아케이드 또는 화장실 설치 사업

○ (구성)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인대표 2인 이상, 시·군·구 담당공무원, 외부 전문가, 건물소유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

* 위원회 참여 제한 : 도소매업이 아닌 건물임대업·부동산중개업, 시설현대화사업 공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등

□ 사업성과 측정방법(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5년간 매년 1회씩 정기 조사하여 시·군·구에 제출할 목적)

○ 사업성과(시설현대화 지원 전·후 매출액 증감, 상인 및 고객 만족도) 측정(조사) 방법을 반드시 기재

- 설문지 양식,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기간, 시·군·구 제출일자(연 1회 정기조사하여 5년간) 등

4. 시·군·구 검토의견

사업추진의 시급성

○

사업내용(시설계획, 운영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

상권활성화 가능성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자구력

○

재원조달 방식의 적정성

○

총평 및 우선순위

○

5. 기타

-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 각종 동의서(사전동의합의서, 사업추진 동의서, 부동산매매 동의서 등) 첨부
- *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 보고서, 지역시장 육성 계획 등 첨부(해당사업에 한함)
-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4. 시·군·구 검토의견

사업추진의 시급성

○

사업내용(시설계획, 운영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

상권활성화 가능성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자구력

○

재원조달 방식의 적정성

○

총평 및 우선순위

○

5. 기타

-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 각종 동의서(사전동의합의서, 사업추진동의서, 부동산매매동의서 등) 첨부
- *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 보고서, 지역시장 육성 계획 등 첨부(해당사업에 한함)
-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작성 방법

□ 공통사항

○ 해당 지자체와 위탁관리 협약 체결

예) 000상인회에서는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을 000지방자치단체와 완공시로부터 00년간 위탁관리 할 예정임

○ 관리·운영 시설물 개요

예) 에스컬레이터 : 설치위치, 규모 및 대수

○ 관리·운영 주체 지정

예) 에스컬레이터 관리주체 : 000시장 상인회 (전화 :)

○ 관리·운영자 지정

예) 에스컬레이터 관리·운영자 : 000시장 상인회 상무이사 홍길동 (전화 :)

○ 관리·운영 예산 충당방법

예) 000상인회 회비의 00%를 매월 적립, 또는 동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000천원 상인회 회비로 추가조성, 000 수익사업을 통한 충당

○ 설계도면 보관방법(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회)

예) 000상인회에서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 설계도면을 00지방자치단체 또는 000상인회 사무실에 영구보존한다.

○ 하자보수 발생시 처리방법

예) 하자보수 기간내는 시공업체가 보수하고, 기간 후에는 적립된 유지관리비로 보수

○ 보수내역 장부 작성·비치

예) 0000년 00월 00일에 000시설물 00지역에 누수로 방수공사(소요비용 000천원)

○ 관리·운영 일지 작성

예) 000시설물

구분	'15. 10. 1				10. 2				10. 3			
	양회	보통	미흡	확인자	양회	보통	미흡	확인자	양회	보통	미흡	확인자
시설 운영 일지												
시설 관리 일지												
시설 보수 일지												
시설 안전 일지												

공동사항의 추가적인 관리·운영계획이 필요한 사업

① 고객지원센터(화장실 포함)

○ 고객쉼터 운영 및 관리계획

예)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하며, 정수기 및 커피자판기, TV, 컴퓨터 등을 비치하여 고객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관리는 상인회원 중 1명이 담당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 화장실 운영 및 관리계획

예)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하며, 청소 등의 관리일정을 상인주관으로 일주일 단위로 지정·운영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 상인교육장 운영 및 관리계획

예) 관리는 000상인회가 하며, 상인 의식개혁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민·민간단체 등의 요구가 있을시 대여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 상인회 사무실 운영 및 관리계획

예)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실로 활용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을 운영할 경우

예) 위탁받은 수익시설물(공동판매장, 공동식당,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수익금은 감가상각비, 운영비(인건비, 냉·난방비, 전기요금, 청소비용 등)에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정산을 실시한다.

○ 소요비품 충당방법 및 관리

예) 필요한 비품(화장지 및 기타) 구입·관리는 000상인회에서 이행

② 아케이드

○ 구조물의 주기적 점검(연 2회 이상) 및 점검 기록부 작성·비치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아케이드 정기점검을 연 2회(3월, 9월) 실시하고 점검기록부는 000상인회에 비치한다.

○ 아케이드 대 청소의날 (연 2회 이상) 운영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아케이드 대청소를 연 2회(3월, 9월) 실시하며 청소비용은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③ 시장바닥

○ 소유 점포 앞 청결상태 유지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시장바닥은 각 상인이
소유한 점포 앞의 청결상태를 상시 유지하
며 000상인회가 관리감독

○ 시장내 바닥은 청소의날 (주 1회 이상) 운영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시장바닥은 대청소를 주 1회
실시(청소 용품은 상인회 분담)

④ 간판(상가)

○ 각 점포 간판의 청소 및 유지 관리는 상인회
의 책임하에 각 점포 상인이 실시

예) 000년에 아케이드 사업시 완공예정인 간판
은 각 상인이 책임지며 000상인회가 관리
감독

⑤ 공설시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 공설시장 관리·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
장상인의 역할분담

-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행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000시설물의 유지보수
는 000지방자치단체가 한다.

- 기타 시장운영 중 발생하는 일반관리사항(청
소, 운영 등)은 상인회에서 담당

예) 운영과 청소 등은 000상인회가 한다.

⑥ 태양광발전시스템

○ 발전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혜택부분의 일부를 유
지관리 비용으로 충당

예) 공동구간 저기료가 월평균 000만원이었으

나, 동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000만원이 감경될 것으로 추정됨으로 감경된 부분의 00%를 매월 적립하여 태양광 전지판 교체비용 등의 시설관리에산으로 사용할 예정

⑦ 공동판매장(운영계획)

○ 해당 지자체와 임대계약 체결

예) 000상인회(또는 000조합)에서는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을 000지방자치단체와 완공 시로부터 00년간 임대계약 할 예정임

○ 운영 주체 지정

예) 000시장 상인회 (전화 :), 또는 000시장 조합

○ 초기자기자본 조성방법

예) 000공동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초기자기자본 000천원을 조성할 것이며, 방법은 참가자(또는 상인회원)로부터 각출한다.

○ 상품구성

예) 판매상품은 우리시장의 주 거래상품인 000, 000, 000등으로 한다.

○ 판매장 인원

예) 상인회(또는 조합)원이 1일 2명 당번제로 한다.

○ 운영시간

예)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한다.

○ 매출이익 및 운영비용, 조합결성 등에 대한 방안

예) 민간전문가(경영)의 컨설팅을 통하여 000공동판매장 정관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별지 제9-1호 서식>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건물주·토지주)**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천원)
 - 국비(천원), 지방비(원), 자부담(원)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임차상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포함),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건물주·토지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별지 제9-1호 서식>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건물주·토지주)**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천원)
 - 국비(천원), 지방비(천원), 자부담(천원)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임차상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포함),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건물주· 토지주 성명	자부담 예상액 (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별지 제9-2호 서식>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상인]**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천원)

- 국비(천원), 지방비(천원)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별지 제9-2호 서식>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상인]**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천원)

- 국비(천원), 지방비(천원), 지방비(천원)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자부담 예상액 (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별지 제10호 서식>

부동산 매매·임대 동의서

○ 성 명 :

○ 매매·임대 대상 토지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
는 00시장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00사업)을 위
해 상기 매매·임대대상 토지를 매도할 것을 동
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부동산 매매·임대 동의서

○ 성 명 :

○ 매매·임대 대상 토지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
는 00시장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00사업)을 위
해 상기 매매·임대대상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
권 등을 임대하거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중